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3월 18일

제안자 : 이기동 의원의

□ 제안이유

- 물품 매입요구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, 상위 법령의 개정 후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안 제8조 및 제9조중 “업무주무자”를 각각 “각 부서의 업무 책임자”로 하고,
- 제16조제3항1호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”로 함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8조 및 제9조중 “업무주무자”를 각각 “각 부서의 업무 책임자”로 하고,

- 제16조제3항1호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”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<u>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</u>의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u>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</u>....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물품을 매입, 수리,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<u>주관과장(주관과장이 없는 청·소는 서무주무자)</u>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, 수리,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<u>업무주무자</u>.....</p>	<p>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<u>각 부서의 업무책임자</u>.....</p>
<p>제9조(물품매입요구의 심사) ① <u>주관과장(주관과장이 없는 청·소는 서무주무자)</u>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채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9조(물품매입요구의 심사) ①<u>업무주무자</u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물품매입요구의 심사) ①<u>각 부서의 업무책임자</u>....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<u>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<u>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</u>.....</p>	<p>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<u>정부가부처·특별시, 직할시</u> 및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<u>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1.<u>광역시</u>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개정안과 같음)</p>